

의안
번호

591

서울특별시 성북구 ombudsman 위촉 구의회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기획위원회

서울특별시 성북구 ombudsman 위촉 구의회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2026. 04. 16.

전문위원 김 동 성

1. 제안경위

가. 제 출 자 : 구청장

나. 의안번호 : 제591호

다. 제출일자 : 2026. 04. 03.

라. 회부일자 : 2026. 04. 07.

2. 제안이유

가. 복잡하고 다양한 고충민원을 제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하고, 불합리한 행정처분에 대한 시정·권고 등을 통해 민원처리에 대한 신뢰성과 구민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성북구 ombudsman을 구성·운영하고자 함.

나. 「서울특별시 성북구 ombudsman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3항 규정에 따라 구의회 추천 인원 1명과 성북구 ombudsman 추천위원회에서 결정된 2명을 성북구 ombudsman으로 위촉하기 위하여 성북구의회 동의 받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옴부즈만 위촉 동의 대상 : 3명

나. 옴부즈만 운영 개요

- 위촉인원 : 3명
- 위촉기간 : '26. 5월 ~ '28. 5월 (임기 2년, 1회 연임가능)
- 근무장소 : 성북구청 6층 직소민원실
- 근무시간 : 주 3회 운영 (월, 수, 금) (주 1일 3시간 순환근무)
- '26년도 예산 : 20,800천원
(수당 16,800천원 /사무관리비 등 3,000천원/업무추진비 등 1,000천원)
- 근무수당 : 100,000원/1일

다. 옴부즈만 주요업무

-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처리 및 이와 관련된 시정 권고
-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민원에 대한 조사 및 합의 조정 등 처리
- 옴부즈만 스스로 인지한 사안의 채택조사 및 집단민원 중재·조정
- 구정에 대한 감시 및 비위의 시정 등에 대한 조치 권고
-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기 위한 의견표명
-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옴부즈만에게 의뢰한 사안의 조사·처리
- 매년 운영상황 구청장과 구의회 보고 및 공표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성북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5. 검토의견

□ 개요

- 본 동의안은 현직 ombudsman 3명의 임기 만료(2026. 6. 25.)에 따라 업무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차기 ombudsman을 신규 위촉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ombudsman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에 의거하여 구의회 동의 받기 위하여 제출된 것임.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법”이라 함) 제32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성북구는 관련 조례 제정(2021.7.) 및 ombudsman 위촉(2022.6.)을 통해 해당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오부즈만 연간 민원처리 내역

□ 연간 민원처리 내역

구분	합계	시정권고	의견표명	기각/각하	종결	심의안내	이첩
2022년	6	1	0	0	1	0	4
2023년	22	0	2	2	1	0	17
2024년	20	2	1	0	0	1	16
2025년	44	1	0	2	4	0	37

□ 주요내용

- 본 동의안은 임기가 만료되는 ombudsman 3명에 대해 구의회 추천 1명과 ombudsman 추천위원회에서 선정한 2명을 포함하여 총 3명을 신규 위촉하려는 것임.
- 위촉 대상자는 2026년 2월 공개모집 후 ombudsman 추천위원회(2026.3.24.)의 심사를 거쳐 선정되었으며, 조례 제3조제3항)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있음.

1) 「서울특별시 성북구 ombudsman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오부즈만의 구성 등) ③오부즈만은 다음 각

- 위촉 대상자들은 5급 이상 공무원 경력을 비롯하여 고충민원 조사, 감사, 인권 등 관련 분야에서의 실무경험을 보유하고 있어 행정 전반에 대한 이해도와 전문성을 갖춘 것으로 판단됨. 특히 중앙 및 지방 행정기관, 경찰 등 다양한 분야의 경력을 바탕으로 옴부즈만 기능 수행에 필요한 조사·조정 역량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옴부즈만 위촉 동의 대상

연번	성명	신청자격	주요이력	비고
1	한○○	5급이상 공무원	- 前) ○○구 보건지소장 - 前) ○○구의회 전문위원	구의회 추천
2	이○○	5급이상 공무원	- 前) ○○시 감사담당관 - 前) ○○옴부즈만위원회 인권과장	
3	이○○	5급이상 공무원	- 前) ○○경찰서 청문감사인권관	

□ **종합의견**

- 이상을 종합해 보면 본 동의안은 관련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제출된 것으로 위촉 절차 및 자격요건 검토 결과 법적·절차적 측면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위촉 대상자 역시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관련 분야의 경험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 옴부즈만으로서의 직무 수행에 적합한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옴부즈만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단순 민원 처리에 그치지 않고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3명 중 1명은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전임강사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5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사람
4. 건축사·세무사·공인회계사·기술사·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3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시정권고 및 제도개선 기능이 보다 활성화될 필요가 있으며, 처리결과의 공개 및 사후관리 체계 강화를 통해 제도의 운영성과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